

『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10월 20일

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선산출장소장 권 순 형

나. 제안이유

- 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, 사용료 감면과 반환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문화 공간 활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위탁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(안 제5조의2)
 - 위탁운영 갱신과 갱신기간 5년에 대한 조항 명시

○ 불필요한 조문 삭제(안 제6조, 안 제13조)

- 공공행사나 공익을 위한 사용 허가 조항 삭제
- 손해배상액이 감정평가액에 따른다는 조항 삭제

○ 사용료 감면 사유를 조례에 직접 규정(안 제10조)

- 공공기관 혹은 공익을 위한 사용의 경우로 감면 사유 규정

○ 사용료 반환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직접 규정(안 제11조)

- 사용자의 취소 신청 등이 있는 경우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
- 회관의 사정 등으로 취소한 경우 10퍼센트를 합산하여 반환
- 천재지변 등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남은 사용일에 대해 반환

○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의 처분 규정(안 제15조)

- 예치금 예탁과 충당으로 규정되어 있던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에 따른 조치를 원상복구 후 정수로 변경하고, 철거된 설비를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처분하도록 규정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 수정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제136조, 제139조, 제144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
- 「소비자기본법」 제16조, 동법시행령 제8조

○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명 호

○ 본 조례안은

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여,

- 사용료 감면사유, 사용료 반환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문화 공간 활용 기회를 제공하고, 용어정리, 띄어쓰기 등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